

공장의 종류(제7조제1항 관련)

1. 식료품 제조업
2. 음료 제조업
3. 담배 제조업
4. 섬유제품 제조업
5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
7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8. 페퍼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9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
10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11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12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13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14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15. 1차 금속 제조업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1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19. 전기장비 제조업
20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21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2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23. 가구 제조업
24. 기타 제품 제조업
25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26. 수도사업
27. 비금속광물 광업
28.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
2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, 법 제111조,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, 법 제146조·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.
 - 가.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**가스업**
 - 나.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**상수도업**
 - 다.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**정비·수리업**
 - 라. 연탄의 제조·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**연탄제조업**
 - 마. **얼음제조업**
 - 바. **인쇄업**. 다만,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「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.
 - 사.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**지역난방사업**
 - 아. **전기업**(변전소 및 송·배전소를 포함한다)